

제 350 호

1973. 3. 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6090

시 보

차 레

◎ 조 레

제 749 호 서울특별시외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3

제 750 호 서울특별시립 직업보도원 설치조
례중 개정조례 4

제 751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합숙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4

◎ 사 령 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년 3월 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49 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가 건립한 시민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 및 제 9 조에 의거 서울특별
시세 (이하 "시세"라 한다)의 과
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아
파트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서민대
중의 주택난 해결과 도시불량지구
의 합리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시
비로 건립한 별표 제 1 호의 아파
트 440 동을 말한다.

제 3 조 (면세대상과 범위) 시민아파
트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시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제 4 조 (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시민아파트 소재지
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
여 처리하게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민아파트를 취득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73
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별표제 1 호

시 민 아 파 트

6-4

구 전년도	종로구		중 구		동대문구		성 동 구		성 북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용 산 구		영등포구		비 고 년도별 동수계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명칭	동수	
68			회현	1			응봉	4			금화	17			효창	2			27
69	청운 동송	11 31	회현	7	3.1 낙산 전농	12 28 5	3.1 응봉 행응	12 9 11	정능 월곡 도봉	8 13 5	금화 연희 창천 현저 북아현 응암 홍제 미동 녹번	113 29 7 5 20 5 6 2 7	와우 노고산	12 4	이촌 산천	10 10	본동 김포	14 5	401
70									정능	1					서부 이촌	6	사당 당산	3 2	12
계		42		8		45		36		27		211		16		31		24	440

제 350 호

시 민 아 파 트

1973.3.5.

5-3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직업보도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년 3월 3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750호

서울특별시립직업보도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직업보도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중 "직업보도원" 및 "삼성직업보도원"을 각각 "소년기술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합숙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년 3월 3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751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합숙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합숙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합숙소 설치조례중 "합숙소"를 "회관"으로 하고 "소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조중 "후생시설을 제공하여" 다음에 "경제적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를 삭제하고 "자활독립의 경제적 기금을 마련케 함을 목적으로"를 삽입한다.

제6조중 ".30일"을 ".90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지방행정감사"를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73. 2. 26.

상 정 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창진
녹지과 근무를 명함.

법 무 과 지방행정주사보 최대순
시민과 근무를 명함.

◎ 1973. 2. 28.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이강언

5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이재현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

김세환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아 동 과 지방행정주사 정의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충청북도 지방행정주사 김완일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8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 1973. 3. 2.

강 원 도 행정 주사 차정옥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 지방행정서기 유근성
사업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종 로 구 지방행정서기보 이응민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종 로 구 지방행정서기보 정광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동 대 문 지방행정서기보 신갑호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3월간 감봉에 처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자 동 차 정 비 창 지방행정 주사보 김철삼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3월간 감봉

에 처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중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조자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간 감봉에 처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